

창원지방법원 2023. 10. 26 선고 2023나101169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창원지방법원 2023. 10. 26 선고 2023나101169 판결

창원지방법원창원남부시법원 2023. 1. 9 선고 2022가소13511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경

피고, 항소인 B

변론종결 2023. 9. 21.

판결선고 2023. 10. 26.

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23. 1. 9. 선고 2022가소13511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22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 9. 15.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8행의 ‘을 제1 내지 2호증’을 ‘을 제1 내지 6호증(가지번호 포함)’으로 고치고,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추가 판단

피고는 이 사건 승계계약을 전후하여 원고가 본인 또는 배우자 등 명의로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와 유사한 권리를 다수 매수한 사실이 있어 매립면허 권리 관계를 피고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 유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,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. 그러나 설령 이 사건 승계계약 당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가 제한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

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이현주, 판사 구민경, 판사 이장욱